

군산시 공고 제 2011-1301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를 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 법 예 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가. 글로벌시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제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 제정함으로써 군산의 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자 함
- 나. 기존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처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하고자 함(안 제5조)
-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안 제6조)
- 기존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근거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 도시에 있는 교포 또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및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함(안 제8조)

나.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선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 도시를 체결할 수 있음(안 제10조)
-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 검토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산시의회 동의록 얻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관계"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외국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관계"란 시와 외국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교류협력 증진

제5조(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

력을 통한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스포츠·학술 및 경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국제대회의 유치) 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7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시는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 주요도시에 군산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2. 현지 시장 동향 수집·제공
3.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상담 및 지원활동
4.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5. 시정 및 문화·관광의 해외홍보
6. 해외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은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⑦ 시장은 해외사무소에서 현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할 수 있다. 채용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 운영)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 자매·우호협력도시 또는 교류가 필요한 지역과 국내에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인사
3. 글로벌 기업의 임원 등 경제인
4. 교민사회의 각종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재외공관과 협조 가능한 사람
5. 미주,유럽,일본, 중국 등 주요국 거주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7. 그 밖에 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활동 등 우리시 차원의 지방외교 및 통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③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자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한다.

1. 시의 해외홍보 지원
2. 외국 선진행정 사례 및 무역·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 수집·제공
3. 외국기관·기업·민간단체 등 도시간의 협력사업 지원
4.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
5. 해외바이어 연결 등 통상사업 지원
6. 그 밖에 경제·문화·교육·기술 등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력

④ 자문관은 시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자문관으로서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지원 등)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문관의 자료수집, 정보제공, 해외홍보 등에 대하여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업무협조 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자문관이 국내외로 출장할 때에는 항공료·체제비 등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의 선정·운영

제10조(자매도시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1조(적용범위) 외국 도시와의 자매 결연과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결연 등의 제의)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제13조(의회 의결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체결)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취소)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 두절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 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매결연 취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계속 정리·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매도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매결연 등의 체결 도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군산시 공고 제2011-1302 호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 법 예 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기존의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근거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나. 근거 법령 변경(안 제2조)

-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다. 법제처 알법 정비(개정안 일부)

- 이라 함은 →이란 ,(안 제2조)

-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운영함에 필요한 경우, 의하여→따라
(안 제3조)
- 현지채용인에 대하여 →현지채용인에게 ,(안 제5조)
- 자 →사람 (안 제6조,안제14조)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청(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사무소”란 시장이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주재관”이라 함은”을 ““주재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현지채용인”이라 함은”을 ““현지채용인”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를 “운영함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현지채용인에 대하여”를 “현지채용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는”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선발된 자”를 “선발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선양할 자”를 “선양할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을 “필요할 때 1회에만 2년의 범위”로, “안에서 이를”을 “안에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를 “하며,”로 한다.

제11조 중 “일시”를 “일시적으로”로,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여행을 하려면”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 제수당”을 “따른 모든 수당”으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산정”을 “산정(算定)”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임차하거나”를 “임차(賃借)하거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상인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활한 자”를 “원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업무”를 “해당 업무”로 한다.

제15조 중 “감안 1회에 한”을 “감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에서”를 “에서”로, “해당관서에 직접 불입한다”를 “해당 관서에 직접 납부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해당 하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때에는 이를”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복무에 관하여”를 “복무에는”으로, “대하여는”는“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u></p>	<p><u>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시행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u>」 제7조에 따라 시행에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u>해외사무소</u>”라 함은 시장이 「<u>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p>	<p>1. “<u>해외사무소</u>”란 시장이 「<u>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p>
<p>2. “<u>주재관</u>”이라 함은 해외사무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근무 명령한 군산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p>	<p>2. “<u>주재관</u>”이란 ----- ----- -----.</p>
<p>3. “<u>현지채용인</u>”이라 함은 해외사무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용하는 주재지역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p>	<p>3. “<u>현지채용인</u>”이란 ----- ----- -----</p>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의 위탁) ①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군산시 해외사무소 주재관과 현지 채용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해외사무소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선발) ① (생략)

②주재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채용 선발된 자
2. 시정업무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한 확고한 소신이 있

-----.

제3조(설치·운영의 위탁) ①----- 운영함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

②----- 따라 -----.

제5조(적용범위) ①----- 현지 채용인에게 -----.

②----- 관리에는 ----- 없으면 -----.

제6조(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1. ----- 이상인 사람 ----- 선발된 사람
2. ----- 있

는 자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과 담당할 업무에 대하
여 지식이 풍부하고 국제통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평소 모범적인 공사 생활을
통하여 군산시의 이미지를 선
양할 자

제7조(근무명령 등) 시장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해외사무소의 주재관으로 근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
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외사무소의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또는 지방전임계약
직의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상의 채용기간 안에서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임무) ①주재관은 군산시
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투자유
치, 국제교류관련 제반 활동을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하여 현지채용인을 지도하고 관

는 사람

3. -----

----- 있

는 사람

4. -----

선양할 사람

제7조(근무명령 등) ----- 제6조
에 따라 -----
-----.

제8조(근무기간) -----
-----.
----- 필요할 때 1회에만 2년
의 범위-----
----- 안에서 -
-----.

제9조(임무) ①-----

----- 모든 -----
----- 하며, -----

리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일시귀국 등) 주재관이 일시 귀국 또는 주재국 이외에 제3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수당 지급) 주재관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에 의한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주택임차료 지급)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되, 임차료의 산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재외공관원 주택임차료 기준」을 준용 한다. 다만 군산시에서 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파견받을 국가의 기관 등에서 주택을 제공할 때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채용기준) ① (생략)

②현지채용인의 직명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일시귀국 등) ----- 일시적으로 ----- 여행을 하려면 -----.

제12조(수당 지급) ----- 따른 모든 수당-----.

제13조(주택임차료 지급) ----- 범위----- 산정(算定)----- 임차(賃借)하거나 -----.

제14조(채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1. 통상관 : 한국어와 해외사무소 주재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국제통상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통상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

----- 해당 -----
----- 있는 사
람.

2. 상담원 : 한국어와 해외사무소 주재국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국제통상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

----- 이상
인 사람

3. 사무보조 : 한국어와 해외사무소 주재국 언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3. -----

----- 원활한 사람

③주재관은 채용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해당업무와 관련된 학력, 경력, 언어소통능력 등 직무수행 능력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사전에 채용 제청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업무-----

-----.

제15조(채용기간) 현지채용인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 능력과 실적을 감안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5조(채용기간) -----

----- 감안-----
-----.

제16조(채용계약) ①해외사무소

제16조(채용계약) ①-----

에서 채용하는 현지채용인은 시장과의 계약에 의하고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7. 그 밖에 일반적인 채용 조건 등

② (생략)

제17조(보수) ①현지채용인의 보수는 채용계약에 명시하되, 다음과 같이 주재국화폐 또는 미국 달러화로 지급한다.

- 1. (생략)
- 2. 상담원 및 사무보조에 대한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등을 참고하여 시장과 연봉계약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통상관 채용 필요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통상관 채용 전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시장은 현지채용인의 의료보험료 등 해외사무소 근무에 따르는 주재국의 의무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

1. ~ 6. (현행과 같음)

7. --- 밖의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수) ①-----

-----.

1. (현행과 같음)

2. -----

-- 따라 -----
-.

3. 제1호에 따른 -----

-----.

②-----

----- 에서 -----

있으며, 이 경우 해외사무소에
서 해당관서에 직접 불입한다.

제19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시
장은 현지 채용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21조(손해배상) 현지 채용인이
고의적으로 해외사무소나 군산
시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주재관의 복무에 관
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외공무
원복무규정」 및 「군산시지방
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 해당 관서에 직접 납부한다.

제19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 해당 하는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손해배상) -----

----- 때에는 -
-----.

제22조(준용) ----- 복무에는

----- 대해서는 「재외공무원복
무규정」-----
-----.

군산시 공고 제 2011-1303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1995.1.13제정되어 시행중인 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는 협의회 구성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 조례에 표기된 용어중 일부는 구시대적, 부정적 의미로 군산시 이미지를 훼손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략함(안 제1조)
- 나. 협의회 기능 중 공동관심사로 명시한 성병보균자, 마약, 미군수 물자 등 부정적인 구시대적 용어를 개선하여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화 함(안 제 3조)
- 다. 위원회 구성 기관 중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를 특수관광협회 및 유흥음식업 협회로 하고 업태부조합(협회)을 삭제함(안 제4조 제2항제6호,제7호)
-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마.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를 변경하고 구성인원을 현실적으로 정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 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는 협의회 개최시기를 미군의 잦은 군사 훈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 미결사안의 건의기관인 “도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전라북도위원회”를 변경함(안 제11조)
- 아. 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전라북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건의토록 조정함(안 제12조)
- 자. 법제처 알법에 의한 정비
 - 인→ 명, 강구→마련, 제반→모든, 기타→그 밖의,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청(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미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를 “한·미친선협회의의”로 한다.

제2조 중 “미군관”을 “미군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협의회”를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로, “공동관심사와”를 “공동 관심사 및 상호간의 권익보호 와 친선에 관한 사항 및”으로, “제반사항에 대하여”를 “모든사항에는”으로, “장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0인 내 지 13인”을 “10명 내 지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국제협력과장이 된다. 다만,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중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법기관(검찰,경찰 및 세관)

6. 특수관광업협회 및 유흥·음식업협회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의 유관 기관 또는 시민대표

제4조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제목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임협의회의”를 “실무협

의회의”로, “2 내지 3명”을 “협의대상이 되는 안건의 관련공무원 및 기관에 필요한 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하여 건의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매월 1일 정기적으로”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비공식적이어야”를 “비공식적여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방”을 “상대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2. 회의개최 장소
3. 부의안건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도위원회”를 “전라북도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고)”를 “(건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건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생 감독

2. 성병 보균자 및 업태부의 선
도

3. 마약의 소지 및 판매단속

4. 미 균표 거래·밀수 및 균수
물자의 암거래 단속

5. 주한 미군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

6. 기타 상호간의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저해

제4조(구성 및 위원의 위·해촉)

① 협의회의 한국측 구성원은 위
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내 지 13인 및 간사 1인을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기관의 대표 또
는 구성원중에서 위촉하고 간사
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1. (생략)

2. 사법기관(경찰)

3. ~ 5. (생략)

6.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
회

제4조(구성 및 위원의 위·해촉)

①-----
----- 1명----- 10
명 내 지 13명 ----- 1명---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기관의 대표 또
는 구성원중에서 위촉하고 간사
는 국제협력과장이 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
기간중 당연직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사법기관(검찰, 경찰 및 세
관)

3. ~ 5. (현행과 같음)

6. 특수관광업협회 및 유흥·음
식업협회

7. 업태부 조합(협회)

8. 기타 유관기관 또는 시민대표

③위원장은 위원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사임케하고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③ (생략)

제6조(분임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부의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분임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의 수는 2 내지 3명으로 한다.

<삭 제>

8. 그 밖의 유관 기관 또는 시민대표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회) ①-----

----- 실무협의회-----
-----.

②실무협의회의 -----
----- 협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관련공무원

<신 설>

③분임협의회는 수임받은 사안이 완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7조(회의) 협의회는 매월 1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이어야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주관) ①정기회는 상호 교대로 타방 위원을 초청하여 개최하되 초청한 기관이 주관한다. 다만, 전조 단서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타방 대표에게 아래 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기관에 필요한 인원-----
-.

③ 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하여 건의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

-----.

제7조(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비공식적여야 ----- . <단서 삭제>

제8조(회의 주관) ①-----

----- . <단서 삭제>

②-----
----- 상대편 -----

----- .

1. 회의개최 일시

2. 회의 개최 장소

3. 부의안건 또는 개최코자 하는 사유

4. (생략)

③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협의회는 양측의 사전협의를 거쳐 회의 일시와 장소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미결사안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도위원회에 건의한다.

제12조(보고) ①위원장은 아래 각 호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소속협의회와 관내 전 협의회 협의회 개최사항

2. 제9조에 의한 협의회 해산사항

3. 주한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불상사나 양측의 친선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

4. 기타 도의 지원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참고될 사항

2. 회의개최 장소

3. 부의안건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11조(미결사안의 처리) -----
----- 전
라북도위원회-----.

제12조(건의) ①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건의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1-1304호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1990년대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이 「국제화추진 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 우리시는 국제화의 조류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다방면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자매도시 5개소, 우호도시 8개소와 기타 9개 도시와 국제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배양하여 왔음
-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그 동안 조례 운용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안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1 - 61 호

고 시

군산시 옥산면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산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일

군 산 시 장

1. 군산 도시관리계획(옥산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1	옥산초교	초등학교	옥산면 옥산리 30학	20,399	1) 감) 175	2) 20,22 4	전북고15 (83.1.29)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주용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14-①	20,399	감) 175	20,224	학 교	
	14-②	5,918	증) 175	6,093	주거지	

2. 군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1-62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군산공영차고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군산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8월 12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내초동 187-29번지의 1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군산공영차고지)
 - 2) 명 칭 : 군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 정(m ²)	실시계획(m ²)	비 고
교통시설	군산공영차고지	56,912	56,912	
소 계			56,912	

4.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교통행정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9. ~ 2015. 1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내초동	187-29	답	1,870	1,533	군산시				
2	내초동	187-6	답	4,827	4,428	군산시				
3	내초동	187-7	답	5,008	4,603	군산시				
4	내초동	187-8	답	4,959	4,551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65	천경식	근저당(국민은행) 지상권(국민은행)		
5	내초동	187-9	답	4,959	4,562	군산시 구암동 323-22	한화숙			
6	내초동	187-10	답	5,018	4,607	군산시 경장동 493-2	강정순	근저당(군산농협)		
7	내초동	187-11	답	4,899	4,464	군산시 미장동 380-19	최수경			
8	내초동	188-24	답	1,478	1,478	군산시 산북동 2937-2	정성래	근저당(군산농협) 지상권(국민은행)		
9	내초동	188-5	답	4,828	4,828	군산시 산북동 2937-2	정성래	근저당(군산농협) 지상권(군산농협)		
10	내초동	188-6	답	5,008	5,008	군산시 구암동 323-22	한화숙			
11	내초동	188-7	답	5,008	5,008	군산시 구암동 323-22	한화숙			
12	내초동	188-8	답	5,068	5,068	군산시 동흥남동 139	반상호			
13	내초동	188-9	답	4,694	4,694	군산시 미장동 380-19	최수경			편입면적 오류정정
14	내초동	226-79	구	3,074	2,08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공사	지분 418,013/435,263		
							군산시	지분 17,250/435,263		
합계				60,698	56,912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소재지			측점	한전주		신주		비고
시	리동	지번		연번	주수	연번	주수	
군산시	소룡동	10-9잡	0-55	0734E441-109	1			1
군산시	소룡동	10-7도	0-10	0734E331-108	1			2
군산시	소룡동	10-6잡	2+5	0734E231-107	1			3

군산시 고시 제2011-6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관리사무소)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관리사무소)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8월 12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룡동 495-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관리사무소)
 - 2) 명 칭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관리사무소)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 정(m ²)	실시계획(m ²)	비 고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공청사 17 (도로관리사무소)	3,535	3,535	
소 계			3,535	

4.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공영사업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1. 7. ~ 2012. 1.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미룡동	495-1	대	1065	1059		군산시			
2	미룡동	494	대	207	207		군산시			
3	미룡동	493	대	906	906		군산시			
4	미룡동	492	잡	584	584		군산시			
5	미룡동	491	잡	262	262		군산시			
6	미룡동	837	구	517	517		군산시			
계				3,541	3,535					